

# 회원사도체육회 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| 개정안  | 비고  |
|---|--|---|
| <b>제9조(관리단체의 지정)</b> ① “생략”<br>1. “생략”<br>2. 60일 이상의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<br>3.~5. “생략”  | <b>제9조(관리단체의 지정)</b> ① “현행과 같음” <개정 2026. 00. 00.><br>1. “현행과 같음”<br>2. 90일 이상의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<br>3.~5. “현행과 같음”  | ■ 관리단체 지정 사유 중 회원단체장의 궐위 및 사고 시 회장 선출 및 조직 정비 등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확대하여 회원단체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부여<br>*「정관」 제12조제1항 개정안반영 |
| <b>제11조(총회의 구성)</b> ① “생략”<br>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<u>부회장</u>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 <개정 2021. 10. 6.><br>③~⑥ “생략” | <b>제11조(총회의 구성)</b> ① “현행과 같음”<br>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<u>부회장(단, 시도체육회 임원인 부회장은 제외한다)</u>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 <개정 2021. 10. 6., 2026. 00. 00.><br>③~⑥ “현행과 같음”                   | ■ 동조 제4항과 같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대의원(대리인)으로 자격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<br>*「정관」 제 14 조 제3항 반영   |
| <b>제14조(총회의 소집 등)</b> ① “생략”<br>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2. 4.><br>1.~4. “생략”<br><신 설><br>③~⑦ “생략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제14조(총회의 소집 등)</b> ① “현행과 같음”<br>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2. 4., 2026. 00. 00.><br>1.~4. “현행과 같음”<br>5. <u>회장의 보궐선거 당선이 확정된 때(단, 임기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정기총회가 예정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)</u><br>③~⑦ “현행과 같음” | ■ 조속한 집행부 구성을 위해 임시총회 개최사유에 ‘회장의 보궐선거 당선 확정 시’ 추가<br>*「정관」 제 17 조 제2항 개정안 반영  |
| <b>제26조(회장의 직무대행)</b> ① “생략”<br>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 | <b>제26조(회장의 직무대행)</b> ① “현행과 같음”<br>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  | ■ 관리단체 지정   |

| 현행   | 개정안   | 비고  |
|--|---|---|
| <p>다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, 궐위된 날부터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<u>60일</u>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,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&lt;제3항에서 이동, 종전 제2항 삭제 2017. 3. 23.&gt;&lt;개정 2017. 5. 15., 2020. 2. 11., 2022. 5. 10.&gt;</p> <p>③ “생략”</p> | <p>다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, 궐위된 날부터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<u>90일</u>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,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&lt;제3항에서 이동, 종전 제2항 삭제 2017. 3. 23.&gt;&lt;개정 2017. 5. 15., 2020. 2. 11., 2022. 5. 10., <u>2026. 00. 00.</u>&gt;</p> <p>③ “<u>현행과 같음</u>”</p>   | <p>사유 중 회장 궐위 또는 사고 후 회장 선출기간 확대</p> <p>*「정관」 제12조 제1항 개정안 반영</p>                     |
| <p><b>제29조(임원의 임기)</b> ①~⑫ “생략”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 | <p><b>제29조(임원의 임기)</b> ①~⑫ “<u>현행과 같음</u>”</p> <p>⑬ <u>제1항, 제8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회장이 선출된 경우, 이사의 임기(회장, 사무처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&lt;신설 2026. 00. 00.&gt;</u></p> <p>1. 기존 이사 : <u>회장 임기시작 이후 직근 총회일 전일까지</u></p> <p>2. 새로 선임된 이사 : <u>제27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총회일(다만,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, 회장이 선임을 한 날)로부터 다음 회장 당선 이후 첫 번째 총회일 전일까지</u></p> | <p>■ 재선거, 보궐선거로 회장 선출된 경우 이사 임기 규정</p> <p>*「정관」 제29조 제12항 개정안 반영</p>                  |
| <p><b>제31조(임원의 사임 및 해임)</b> ①~③ “생략”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| <p><b>제31조(임원의 사임 및 해임)</b> ①~③ “<u>현행과 같음</u>”</p> <p>④ <u>임원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·국회의원선거·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(또는 후보자등록)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일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. &lt;신설 2026. 00. 00.&gt;</u></p>   | <p>■ 현직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의 (예비)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봄.</p> <p>*「정관」 제31조 제3항 반영</p> |
| <p><b>제38조(스포츠공정위원회)</b></p> <p>① “생략”</p> <p>②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<u>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</u>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<b>제38조(스포츠공정위원회)</b></p> <p>① “<u>현행과 같음</u>”</p> <p>②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<u>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</u>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</p>  | <p>■ 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」 위원 구성 요건 명시 일원화로 관련 내용 삭제</p> <p>*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」 개정안 참고</p>         |

| 현행   | 개정안   | 비고   |
|--|---|--|
| <p>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20. 2. 11., 2021. 10. 6.&gt;</p> <p><u>1. 법학자,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</u></p> <p><u>2.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u></p> <p><u>3.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u></p> <p><u>4.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&lt;신설 2019.5.29.&gt;, &lt;개정 2021. 10. 6.&gt;</u></p> <p>③~⑤ “생략”</p> | <p>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20. 2. 11., 2021. 10. 6., <u>2026. 00. 00.</u>&gt;</p> <p><del>1. 법학자,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</del></p> <p><del>2.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del></p> <p><del>3.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del></p> <p><del>4.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&lt;신설 2019.5.29.&gt;, &lt;개정 2021. 10. 6.&gt;</del></p> <p>③~⑤ “현행과 같음”</p>  |  |
|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 | <p><b><u>부칙(2026. 00. 00.)</u></b></p> <p><b><u>제1조(시행일)</u></b>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<u>제2조(통합시·도체육회의 설립)</u></b> ①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통합시·도체육회를 설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통합시·도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시·도체육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통합시·도체육회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일에 기존 시·도체육회의 모든 권리·의무·재산 및 회원을 포괄 승계한다.</p> <p>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통합시·도체육회(시·도종목단체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.) 임원의 중임 횟수는 통합 전 각 시·도체육회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. 다만, 통합시·도체육회 설립일부터 초대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</p> | <p>■ 시행일 명시</p> <p>■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</p> |

| 현행 | 개정안   | 비고 |
|----|---|----|
|    | <p><u>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⑤ 통합 대상 시·도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시·도체육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</u></p> <p><b>제3조(회원단체 가입의제)</b> <u>부칙 제2조에 따라 통합시·도체육회가 설립되는 경우, 해당 통합시·도체육회는 「가입·탈퇴규정」에 따른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<b>제4조(통합시·도체육회의 설립에 대한 경과조치)</b> <u>부칙 제2조에 따라 통합시·도체육회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 시·도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통합시·도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.</u></p> <p><b>제5조(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</b> <u>제29조제1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</u></p> |    |